

의안번호	제 166 호
의결 연월일	2015. 4. . (제 339 회)

**충청북도 청소년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자	장선배 의원 등 7인
발의연월일	2015년 4월 13일

충청북도 청소년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장선배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66
----------	-----

발의연월일 : 2015년 4월 13일

발 의 자 : 장선배, 박봉순, 박한범
박종규, 임병운, 최병윤
이숙애

1. 개정이유

- 가. 기금 운용 시 매년 이자의 10%이상을 재적립하도록 명시한 조항을 삭제하여 기금 활용도를 제고하고자 함.
- 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및 문구를 수정하여 일반 주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함.

2. 주요내용

- 가. 매년 이자의 10%이상 기금 재적립 조항 삭제(안 제4조)
- 나. 기금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회계공무원 지정 조항 문구 수정(안 제4조)
- 다. 기금 지급 대상 중 ‘산업체 근로청소년’을 ‘근로청소년’으로 수정하고 ‘특별학습설치 학교의 장’을 ‘해당 학교의 장’으로 수정(안 제5, 6조)
- 라. ‘사군 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를 ‘사군 청소년육성위원회’로 수정(안 제6조)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붙임

나. 예산조치 : 해당 없음

다. 협의 : 여성정책관실 청소년팀과 협의

라. 입법예고 : 해당 없음

충청북도 조례 제 호

충청북도 청소년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청소년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 제56조에 따라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과 장학사업의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충청북도 청소년육성기금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기금구성) 충청북도청소년육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2. 기금운영으로 생기는 수익금 또는 그 밖의 수입금

제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도금고**”를 “**충청북도금고**”로, “**여유자금은 「충청북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여유자금은 「충청북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7조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 ② 기금집행은 해당 연도 이자수입금 범위 내에서 지출한다.

③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 라 한다)는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 기금업무 담당관
2. 기금출납원 : 기금업무 담당 사무관

제5조제1항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기금의 지급대상은 충청북도(이하 “도” 라 한다)내에 거주하는 소년소녀가장과 무직·미진학청소년 및 근로청소년으로 다음 각 호에 따라 구분 지급한다.

제6조제1항 본문 중 “정하는 제5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청소년중 기금을 지급함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시·군 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의” 를 “시·군 청소년육성위원회의” 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단, 근로청소년은 해당 학교의 장이 추천할 수 있다.

제6조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천된 청소년은 충청북도” 를 “제1항에 따라 추천된 청소년은” 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u>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정환경이 어려운 소년소녀가장과 무직·미진학청소년 및 산업체 근로청소년등 불우한 청소년들의 진학(취학), 직업훈련 또는 생활정착을 위하여 지원할 충청북도청소년육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u></p>	<p><u>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기본법 제56조에 따라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과 장학사업의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충청북도청소년육성기금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u></p>
<p><u>제2조(기금구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생 략) 2. 기금운영으로 생기는 수익금 또는 <u>기타</u> 수입금 	<p><u>제2조(기금구성) 충청북도청소년육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현행과 같음) 2. 기금운영으로 생기는 수익금 또는 <u>그 밖의</u> 수입금
<p>제3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생 략)</p> <p>② 심의위원회에서 다음 <u>각호</u>의 사항을 심의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 2. (생 략) 3. <u>기타</u> 기금운용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p>③ (생 략)</p>	<p>제3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현행과 같음)</p> <p>② ----- <u>각 호</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 2. (현행과 같음) 3. <u>그 밖에</u> ----- <p>③ (현행과 같음)</p>

제4조(기금관리·운용) ① 기금은 도금고에 예치하여 관리하되, 여유자금은 「충청북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합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

② 기금집행은 당해년도 이자수입금 범위내에서 지출하되 매년 이자의 10%이상은 기금의 증식을 위하여 재정립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기금의 관리·운용을 위하여 소속공무원중에서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임명 또는 소속기관에 설치된 관직을 지정함으로써 이에 갈음할 수 있다.

④ (생략)

제5조(기금지급대상등) ① 기금의 지급대상은 도내에 거주하는 소년소녀가장과 무직·미진학 청소년 및 산업체 근로청소년으로 다음 각호에 의거 구분 지급하고 충청북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

1. 2. 3. (생략)

②·③ (생략)

제4조(기금관리·운용) ① -----
충청북도금고-----, 여유자금은 「충청북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7조에 따라-----
-----.

② 기금집행은 해당 연도 이자수입금 범위 내에서 지출한다.

③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 기금업무 담당관
2. 기금출납원 : 기금업무 담당
사무관

④ (현행과 같음)

제5조(기금지급대상등) ① 기금의 지급대상은 충청북도(이하 “도”라 한다)내에 거주하는 소년소녀가장과 무직·미진학 청소년 및 근로청소년으로 다음 각 호에 따라 구분 지급한다.

1. 2. 3. (현행과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

제6조(대상추천자 및 선발) ① 지원사업 기금지원 대상자는 시장·군수가 정하는 제5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청소년중 기금을 지급함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시·군 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 의결을 거쳐 추천한다. 단, 산업체 근로청소년중 야간 특별학급 장학급 지급대상자는 특별학급설치 학교의 장이 추천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천된 청소년은 충청북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발하고 이를 시장·군수 및 해당 학교장에게 통보한다.

제6조(대상추천자 및 선발) ① ---

 ----- 시·군 청소년육성
 위원회의-----

 -----.

단, 근로청소년은 해당 학교의 장이 추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추천된 청소년
 은-----

 -----.

관계법령 발췌

□ 청소년 기본법

제11조(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의 설치) ① 청소년육성에 관한 지방자치 단체의 주요 시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 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소속으로 지방 청소년육성위원회를 둔다.

②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의 구성·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제56조(지방청소년육성기금의 조성) ① 시·도지사는 관할구역의 청소년활동 지원 등 청소년육성을 위한 사업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 하기 위하여 지방청소년육성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청소년육성기금의 조성·용도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